

개정 정부조달협정(GPA)의 주요 내용과 정책 시사점

- 박혜리 무역통상실 지역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hrpark@kiep.go.kr, Tel: 044-414-1029)

차 례 ●●●

1. 개정 정부조달협정 발효 배경
2.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주요 내용 및 국별 양허안 비교
3. 평가 및 정책 시사점

주요 내용 ●●●

- ▶ 2016년 1월 14일 개정 WTO-GPA가 발효되어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제조달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
 - GPA개정은 협정문(Text)과 양허안 개정으로 추진되어, 2011년 12월 15일 최종 타결되었고, 우리나라는 국내 절차를 거쳐 2015년 12월 15일 개정 GPA 발효를 위한 수락서를 WTO에 기탁한바 있음.
- ▶ 협정문 개정에서는 △변화된 조달환경 반영 △조달제도의 투명성 강화 △조달협정 이행의 원활화 △조달제도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거나 보완됨.
- ▶ 양허안 개정에서는 양허하한선 인하보다는 양허대상기관 추가, 서비스 및 건설서비스 부문에서의 양허범위 확대를 통해 양허개선이 이루어짐.
 - EU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중앙정부기관을 Catch-all 방식으로 폭넓게 개방하고 철도조달을 신규 양허
 - 건설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어 BOT도 정부조달대상에 포함
 - 우리나라의 주요 양허개신사항은 양허대상 중앙정부기관 추가, 공기업 개방 확대임.
 -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에서의 정부조달 개방수준과 비교 시 개정 GPA에서 각국의 양허수준이 높아짐.
- ▶ 이번 개정 GPA 발효의 의의는 △국내 조달시스템의 선진화 기회 △우리기업의 해외조달 진출기회 확대임.
- ▶ 개정 GPA 발효 이후, 우리나라는 GPA 합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확대된 해외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GPA/FTA 협정국: 협정을 활용한 선점 전략(확대된 시장 및 품목 공략, 신설 규정 및 절차의 홍보 및 교육)
 - 협정 미체결국: 각국별 통상환경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TPP 회원국, GPA 가입 예정국에 대한 사전 조사)

1.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발효 배경

- 우리나라 정부는 2015년 12월 15일 개정 정부조달협정(이하 개정 WTO-GPA) 발효를 위한 수락서를 WTO에 기탁하였고 이에 따라 2016년 1월 14일(수락서 기탁 후 30일 경과)부터 우리나라도 개정 GPA의 적용을 받게 되었음.
- GPA 개정협상¹⁾은 지난 1997년 개시되었으며, 협정문협상과 양허협상으로 나누어 추진되었음. 협정문협상은 기존 GPA 협정문의 문구 수정 및 조항 신설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양허협상은 회원국별 양허하한선과 양허대상기관 설정, 예외 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음.
- 협정문협상은 1997년 시작되어 2006년 마무리되었으며, 2004년부터 시작된 양허협상은 2011년 마무리되어 2011년 12월 15일 GPA 개정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
- 이후 각국 양허안에 대한 기술적인 검증 및 문안 정리 작업과 각국별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거쳐 2014년 4월 6일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정 GPA가 발효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국내절차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2016년 1월 14일 발효된 것임.

표 1. 개정 GPA 추진경과

연도	내용
1996년 1월	WTO-GPA 발효
1997년 1월	우리나라 WTO-GPA 발효
1997년 1월	협정문 개정 협상 개시
2004년 7월	양허확대 협상 개시
2006년 12월 4일	협정문 협상 완료
2011년 12월 15일	양허협상 완료/ WTO-GPA 개정안 타결
2012년 3월	WTO 조달위원회에서 최종 채택(GPA/W316)
2013년 11월	우리나라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통령 재가
2014년 4월 6일	회원국 개정 WTO-GPA 발효(아르메니아, 한국, 아루바, 스위스 제외)
2015년 12월 15일	우리나라 개정 WTO-GPA 발효를 위한 수락서 WTO에 기탁
2016년 1월 14일	우리나라 개정 WTO-GPA 발효(수락서 기탁 후 30일 경과)

자료: 저자 작성.

- 이로써 우리나라는 GPA 회원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기관, 공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건설 서비스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음.
- 2016년 1월 현재 개정 GPA 발효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3개국이며 스위스도 금년 내 발효 예정임.
- GPA 옵저버 국가(30개국) 중 중국, 호주를 포함한 10개국은 현재 가입협상 중인 바, 향후 GPA 가입 예상 국가들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 GPA 발효로 확대된 잠재시장 규모는 상당함(표 2 참고).

1) GPA 개정협상의 근거 규정은 GPA 제24조 7항 다호(향후 작업)이며, 이 조항에서는 협정의 개선 및 적용범위 확대를 위하여 주기적인 후속 협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표 2.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 현황

지역		국가 수	회원국
회원국	아시아	7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대만, 아르메니아, 뉴질랜드,
	미주	3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령 아루바
	유럽	32	EU(28개국), EFTA(4개국), 몬테네그로
옵저버 국가		30개국 (10개국은 가입협상 진행 중)	

자료: WTO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주요 개선내용 및 국별 양허안 비교

가. 협정문안 주요 개선내용

■ WTO-GPA 협정문 개정에서는 최근 변화된 조달환경을 반영하고 조달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규정이 신설되었고, 아울러 회원국간 통상마찰과 협정 이행단계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문구 수정 및 보완 작업이 이루어짐(표 3 참고).

- 변화된 조달환경을 반영하는 규정으로 전자조달 이용 장려, 호환 가능한 IT 시스템 이용 권장, 환경 보호를 고려한 기술 규격 신규 인정 등이 있음.
- 공정한 조달제도(조달시장 접근성 향상, 조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정으로 요약공고 유지, 조달정보 공개, 국내 실적 요구 금지, 공급자 이익제기 관련 규정 등이 있으며 이번 개정 GPA에서는 이를 강화 및 보완하였음.
- 조달협정 이행의 원활화(협정 내용 이행시 혼란, 회원국간 마찰 최소화)를 위해 협정 적용범위, 적용 배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관련 문구 및 표현을 사용자 친화적(user-friendly)으로 개정하였으며 협정 의무사항의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의조항²⁾을 신설하였음.
- 조달제도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개도국에 대한 특혜(가격특혜, 대응구매, 양허기관 및 분야 등의 단계적 추가 등) 규정을 도입, 조달시장 개방에 소극적인 개도국들의 GPA 가입을 유도함.

표 3. 협정문 개정 주요내용(개정 전/개정 후 GPA 비교)

구분	개정 전 GPA	개정 GPA
정의	없음	제1조 신설
적용범위	제1조	제2조 협정 적용대상 외에 별도로 명시하던 특정목적 조달(개발원조, 주둔군 등)을 제2조 제3항에 규정

2) 개정 WTO-GPA 협정문 제1조 신설.

표 3. 계속

구분	개정 전 GPA	개정 GPA
일반원칙	제3조 내국민대우/비차별 제4조 원산지 제16조 대응구매	제4조 ① 내국민대우/비차별, 원산지, 대응구매 통합 규정, ② 전자조달 시 일반적인 IT시스템과 호환성 보장 조항 신설 ③ 투명성·공정성 규정 조항 신설
개도국 특별대우	제5조 개도국은 협정 예외를 다른 회원국과 협상 가능, 예외신청 가능	제5조 과도조치(가격특혜, 대응구매, 양허기관 및 분야 단계적 추가 등) 규정 조항 신설
참가조건	제8조 재정·사업·기술능력 등 참가조건의 국내외 공급자간 비차별 적용	제8조 과거 수주실적의 입찰참가 조건화 금지 규정 신설
기술규격	제6조 ① 도안·특징보다 성능위주 ② 국제표준 우선	제10조 자원보전 및 환경보호 고려한 기술규격 신규 인정
전자조달	(없음)	제6조 법령, 조달공고 등의 전자적 공표 가능 제14조 전자경매시 제공정보 요건
이의 제기	제20조	제18조 국내법상 공급자가 협정위반에 직접 이의제기하지 못할 경우, 해당 당사국의 협정 이행조치의 불합치 사항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
양허의 수정	제24조	제19조 ① 별도 조항 신설 ② 위원회가 양허 수정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 해소를 위해 중재절차, 민영화 기준, 보상기준 채택 규정
분쟁 해결	제22조	제20조 조달분야 유자격자의 패널 포함 의무 삭제
최종 조항	제24조	제22조 현행 GPA 상 공개조달을 왜곡하는 차별적 조치의 도입·유지의 회피노력 규정 유지

자료: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와 개정 GPA 협정문을 참고하여 저자 요약 정리.

나. 국가별 양허안 비교분석³⁾

■ 개정 WTO-GPA 양허하한선으로 중앙기관의 상품 및 서비스는 13만SDR, 건설서비스는 500만SDR, 지방정부 상품 및 서비스는 20만SDR, 건설서비스는 500만SDR, 공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는 40만 SDR, 건설서비스는 500만SDR이 적용되며 조달주체별로 국가별 비교 및 특이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4 참고).

- 중앙정부의 경우, 모든 회원국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부기관을 제외하고는 중앙정부에 속한 대다수 기관들을 조달기관으로 양허하고 있음.
- o 중앙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양허하한선은 WTO-GPA에서 요구되는 13만SDR을 대부분의 국가가 따르고 있음. 건설서비스의 경우 일본과 아루바가 각각 450만SDR과 400만SDR으로 개방수준이 비교적 높고, 이스라엘⁴⁾은 850만SDR로 개방수준이 낮음.

3)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허수준 및 양허범위, 양허 제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본고에서는 비교가 가능한 양허하한선 기준으로 양허수준을 비교하고 개별국의 특징적인 사항을 보충적으로 기술함.
4) 이스라엘은 개정 WTO-GPA 발효 6년차부터 500만SDR 적용함.

-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은 특정 국가 및 품목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 특히, 유럽연합은 공공 공사(public works concessions) 조달의 경우 한국에 차별적 양허하한선⁵⁾을 설정
 - 지방정부의 경우 물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양허하한선은 대부분 20만SDR이나 미국 및 캐나다는 35.5만SDR로 개방수준 다소 낮음.
-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은 대부분의 국가가 500만SDR로 설정한 데 반해 한국과 일본은 1,500만SDR로 개방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임. 따라서 유럽연합과 미국도 한국 건설서비스⁶⁾에 대해서는 높은 양허하한선(1,500만SDR)을 적용.
 - 공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의 양허하한선은 대부분 40만SDR이나, 일본(13만SDR), 캐나다와 이스라엘(35.4만SDR)은 비교적 개방수준이 높음.
-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은 대부분 국가가 500만SDR로 설정하였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1,500만SDR로 개방수준이 낮음.

■ 개정 WTO-GPA의 양허안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여전히 건설서비스 부분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양허하한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은 상호주의 규정을 통해 우리나라 건설서비스 조달에 차별적인 양허하한선을 적용하고 있음.

표 4. 개정 GPA 양허하한선 국가별/주체별 비교

(단위: 만 SDR)

국가별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기관(공기업)	
	상품 및 서비스	건설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건설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건설서비스
GPA 양허하한선	13	500	20	500	40	500
아르메니아	13	500	20	500	40	500
캐나다	13	500	35.5	500	35.5	500
유럽연합	13	500 ¹⁾²⁾	20 ³⁾	500 ¹⁾²⁾	40	500
홍콩	13	500	지방정부 없음		40	500
아이슬란드	13	500	20	500	40	500
이스라엘	13	850 ⁴⁾	25	850	35.5	500
일본	10	450 ⁵⁾	20	1500 ⁶⁾	13	450 or 1500 ⁵⁾
한국	13	500 ¹⁾	20 or 40	1500 ⁴⁾	40	1500
리히텐슈타인	13	500	20	500	40	500
아루바	10	400	지방정부 없음		40	500
뉴질랜드	13	500	20	500	40	500
노르웨이	13	500	20	500	40	500
싱가포르	13	500	지방정부 없음		40	500
스위스	13	500	20	500	40	500

5) 한국에 대해 1500만SDR 적용,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500만SDR 적용함.

6)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이 높은 일본에 대해서는 미항공우주국, 유틸리티 관련 서비스를 양허 제외하는 등 양허범위에 제한을 둬.

표 4. 계속

국가별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기관(공기업)	
	상품 및 서비스	건설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건설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건설서비스
대만	13	500	20	500	40	500
미국	13	500	35.5	500 ⁷⁾	US \$25/40	500 ⁷⁾

주: 1) BOT, 공공 공사, GPA양허대상 PPPs를 포함.
 2) 공공공사(public works concessions)조달의 경우 한국에 대해 1500만SDR 적용.
 3) 캐나다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35.5만SDR 적용.
 4) 이스라엘은 개정 GPA 발효 6년차부터는 500만 SDR 적용.
 5) 건축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술서비스는 45만SDR 적용.
 6) 건축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술서비스는 1500만SDR 적용.
 7) 한국은 1500만SDR 적용.

자료: 개정 WTO-GPA 협정문, 각국 양허안.

■ WTO-GPA 양허확대 협상에서의 주요 양허개선은 양허하한선 인하보다는 양허대상기관 추가, 서비스 및 건설서비스 부문에서의 양허범위 확대를 통해 이루어짐.

- 미국은 12개 중앙정부기관을 신규 양허하고 공기업의 양허하한선을 인하하였으며, 건설서비스 부문의 양허범위도 확대하였음. 특이사항은 지방 유틸리티 서비스(Rural Utility Service)의 경우 국산품 사용 요건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점임.
- EU는 Catch-all 방식⁷⁾으로 중앙정부기관을 폭넓게 양허⁸⁾하고 철도조달도 신규 양허⁹⁾하였으며 서비스¹⁰⁾ 및 건설서비스¹¹⁾ 양허범위도 확대함.
- 일본은 중앙기관의 상품 및 서비스 양허하한선을 13만SDR에서 10만SDR로 하향조정하고 7개 지방정부를 신규 양허하였으며, 서비스 양허대상 품목이 대폭 확대되고 건설서비스에 BOT을 포함함.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도 EU와 마찬가지로 Catch-all 방식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폭넓게 양허하였으며 서비스 양허범위를 확대함.
- 이스라엘은 중앙기관(5개 추가 양허), 공기업(9개 추가 양허)의 양허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 양허범위를 확대함. 특이사항은 1981년부터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대응구매(Offset)¹²⁾를 개정 GPA 발효 6년 이후부터 단계적 축소·철폐하기로 함.¹³⁾

7) 현재 양허 리스트에 있는 기관뿐 아니라 향후 만들어지는 기관에 대해서도 폭넓게 양허하는 방식임.

8) 단,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기존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양허함.

9) 우리나라와는 고속철도를 제외한 일반철도 조달만 상호 개방함.

10) 통신서비스 등 신규 포함.

11) BOT 신규 양허.

12) 국산부품사용의무나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하거나, 투자 의무 및 역수출을 조건으로 정부조달계약을 행하는 것을 말함.

13) 개정 WTO-GPA 발효 6년 이후부터 대응구매 ‘국산품 비율 20% 이상’을 축소하여 발효 이후 최종 15년까지 완전 철폐하기로 합의함.

다. 우리나라의 양허 개선

■ 우리나라는 개정 WTO-GPA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관, 공기업을 추가 개방하고 서비스 및 건설서비스의 양허범위를 확대함(표 5 참고).¹⁴⁾

- 중앙정부 7개 기관, 지방정부 52개 기관, 공기업 7개 기관을 신규 양허함.
- 중앙정부기관: 소방방재청,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지방정부기관: 울산광역시, 51개 기초자치단체
- 공기업: 서울 메트로, 서울 도시철도공사, 인천 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 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광주 도시철도공사
- 지방정부(기초자치단체) 상품 및 서비스 양허하한선은 40만 SDR로 광역시 양허하한선(20만 SDR)보다 높게 설정(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은 광역시와 지역자치단체 동일)
- 공기업의 상품 양허하한선을 인하하였고, 미양허하였던 서비스를 신규 양허하고 양허하한선은 40만 SDR로 설정함.

표 5. 개정 GPA에서의 우리나라의 양허개선 내용(개정 전 FTA와 비교)

(단위: 만 SDR)

조달 주체		양허대상 기관수 확대	양허하한선 하향 조정		
			상품	서비스	건설 서비스
중앙정부		7개 추가 양허 (35개→42개)	13→ 13	13→ 13	500→ 500
지방정부	A 리스트	1개 신규양허 (15개→16개)	20→ 20	20→ 20	1,500→ 1,500
	B 리스트	51개 신규양허	미양허→40	미양허→40	미양허→1,500
기타기관(공기업)		7개 추가양허 (18→25개)	45→40	미양허→40	1,500→ 1,500

주: 진한 색은 양허개선이 이루어진 부문임.
자료: WTO(GPA/O/KOR/2/Rev.3)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우리나라는 조달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예외 주석을 신설하여 국내 농산물을 학교 급식조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소기업 우대조치 예외 주석을 통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음.

14) 개정전 WTO-GPA와 비교하여 양허 개선된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함.

라.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정부조달 양허안과 비교

■ 기체결 FTA에서의 정부조달 양허수준과 비교하면 중앙정부의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FTA에서의 양허하한선이 다소 낮지만, 지방정부와 공기업을 양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양허범위 측면에서 보면 개정 GPA의 개방폭이 훨씬 큼(표 6 참고).

- 한·싱가포르 FTA는 중앙정부 개방수준이 개정 GPA보다 다소 높지만, 공기업 서비스는 미양허하였고 건설 서비스 양허하한선은 1,500만 SDR로 설정하고 있음.
- 한·EU FTA의 조달시장 개방수준은 GPA와 동일하며 개정 GPA에서 양허대상 기관 및 품목을 확대함.
- 한·미 FTA의 경우 중앙정부 개방수준이 개정 GPA보다 다소 높지만 지방정부와 공기업을 전면 미개방하고 있어 미국 조달시장의 지방정부 및 공기업은 GPA를 통해 개방
- 한·캐나다 FTA도 중앙정부 양허수준이 다소 높으나 지방정부와 공기업을 전면 미양허하고 있어, GPA를 통해 지방정부 및 공기업 개방함.
- 한·뉴질랜드 FTA의 중앙정부기관 양허수준은 GPA와 동일하나, 한·미 FTA, 한·캐나다 FTA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와 공기업을 양허하지 않음.

표 6. 기체결 FTA에서의 정부조달 양허하한선

(단위: 만 SDR)

GPA/FTA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기관(공기업)			
	상품	서비스	건설 서비스	상품	서비스	건설 서비스	상품	서비스	건설 서비스	
GPA 가입국	한·싱가포르 FTA	10	10	500	지방정부 없음			40	미양허	1,500
	한·EU FTA	WTO-GPA와 동일								
	한·미 FTA	10	10	500	미양허			미양허		
	한·캐나다 FTA	7	7	500	미양허			미양허		
	한·뉴질랜드 FTA	13	13	500	미양허			미양허		
GPA 미가입국	한·칠레 FTA	5	5	500	20	20	1,500	45	미양허	1,500
	한·페루 FTA	9.5	9.5	500	20	20	1,500	40	40	1,500
	한·호주 FTA	13	13	500	20	20	1,500	45	미양허	1,500

자료: 국별 FTA 협정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4. 개정 GPA 발효의 의미와 및 정책 시사점

■ 이번 개정 WTO-GPA 발효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국제조달규정에 편승함으로써 국내 조달시스템이 선진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우리나라는 국제조달협상에서 서비스 분야(특히 건설 서비스)에서 수세적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이번 개정 GPA를 통해 제한적이거나 국내 조달시장의 개방을 확대한바, 이를 통해 국내 조달시장의 경쟁을 통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가와 정부예산 절감을 통한 국민편익 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개정 WTO-GPA에서 도입하고 있는 호환가능한 IT 활용, 환경을 고려한 기술규격 인증, 양허대상 서비스품목 확대 등은 변화하고 있는 조달시장 환경을 반영하고 있어,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함은 물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조달제도의 선진화와 더불어 개정 WTO-GPA 발효의 실질적인 기대이익은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회 확대¹⁵⁾임.

- 현재 개정 WTO-GPA 가입국은 43개국이며, 각 회원국들은 이번 개정 양허안에서 양허하한선을 하향조정하는 동시에 양허대상기관과 양허대상 품목을 크게 확대하였고 중국, 호주를 포함한 10개국은 이미 GPA 가입협상을 진행 중인 바, 향후 잠재시장까지 고려한다면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회는 크게 확대됨.
- 또한, 우리기업이 해외 진출 시 겪는 애로사항(진출시장에 대한 정보부족, 보이지 않는 차별, 폐쇄적인 조달관행 등)이 이번 개정 WTO-GPA에서 강화된 규정(국내 수주실적 요건 금지, 요약공고 유지 및 이의제기 관련 규정 강화)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개정 GPA 발효 이후 우리는 대내적으로는 협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조달절차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양허 개선을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전략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현재 GPA/FTA를 통해 총 48개국¹⁶⁾과 상호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며(그림 1 참고) 현재 FTA 체결 진행 중인 국가들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인바, 방대한 정부조달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조달환경과 통상환경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이 필요함.

- GPA/FTA를 통해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된 국가¹⁷⁾에 대해서는 해당국가의 양허내용을 숙지하고 개정 GPA를 통해 추가 개방된 기관 및 시장을 공략하여 선점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함.
 - o 정부는 국내 기업 및 개인 공급업자들에게 양허 확대된 시장과 분야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기업 또한 변화된 조달 환경을 이해하고 BOT, 도시철도, 통신서비스 등 신규로 포함된 유망진출 분야를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함.

15) WTO 사무국 발표에 따르면 개정 WTO-GPA를 통한 양허확대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연간 800~1,000억 달러의 정부조달시장 개방 효과가 발생함 (“Ministers greet progress on ratification of revised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2013.12.4, WTO 2013 News Items).

16) FTA 체결국 중 정부조달시장을 미개방한 ASEAN, 인도, 터키, 중국, 베트남은 제외함.

17) 일반적으로 GPA 조달시장 개방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정부조달협정 회원국에 대해서는 GPA 기준을 적용하고, FTA 체결(정부조달 포함)국에 대해서는 FTA 정부조달 챕터를 적용함.

그림 1. GPA 회원국/FTA 체결국 현황



주: 1) FTA 체결국 중 밑줄은 정부조달시장 미개방.

2) * 표시는 미발효국.

자료: 저자 작성.

예 1) EU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이번 개정 GPA에서 한국에 대해 도시교통조달시장을 신규 개방한 바, 향후 해당 분야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됨.

예 2) 일반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율되던 민간투자(BOT)가 WTO-GPA 양허대상에 포함되면서 민간투자 부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부분의 진출장벽이 완화될 것으로 보임.

예 3) 호주는 GPA 미가입국이지만 한·호주 FTA를 통해 상호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였고, 최근 타결된 TPP에서는 공기업과 서비스(특히 건설서비스) 부문 개방수준이 더욱 높아짐. 호주는 외국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이 적고 국방 분야 조달 수요가 높은 국가로 향후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기대이익이 높은 국가로 볼 수 있음.

- 현재 국제협정을 통한 정부조달시장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라 할지라도, 향후 개방 가능성이 있거나 조달 수요가 풍부한 국가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함.

o 개정 GPA에서 도입된 개도국에 대한 특혜규정으로 향후 개도국들의 GPA 참여 가능성이 높아졌고 TPP를 통해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신규로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한바, 향후 이들 국가의 조달시장에서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 분석 및 유망상품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함.

예 1) 정부조달 부분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 조달의 경우,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인해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⁸⁾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조달시장 진출이 유리함.

18)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실적(누계 기준)은 베트남 7위, 말레이시아 10위임.

- 예 2) 최근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를 활용, 상대적으로 조달 실적이 미미한 중남미 인 프라 시장진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 예 3) 중국은 FTA에서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GPA 가입협상을 진행 중이나, 향후 중국의 GPA 가입 이후 중국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중국은 시장규모가 크지만 폐쇄적인 조달관행과 지역별 조달제도 운영으로 기업 진출이 까다로운 시장임.
- 예 4) 베트남은 최근 TPP를 통해 조달시장을 개방(한·베트남 FTA에서는 조달시장 미개방)하였으나 단계별 양허인허방식을 채택하여 진출 초기의 기대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유망 품목인 의약품 및 의료산업, 건설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진출 전략이 바람직함. **KIEP**